

2018학년도 후기 추가모집(야간) 자동차산업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

1.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

과정	학과	모집인원	수업연한	응시자격
석사	자동차공학	0명	2년(4학기)	신입생 : 4년제 대학졸업(예정)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.(학부전공에 제한 없음)

2. 전형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원서접수(인터넷)	2018.06.25.(월) ~ 2018.08.03.(금)	인터넷 원서 작성 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제출
전형(서류 및 면접)	2018.08.11.(토) 11:00 예정	자동차산업대학원 교학팀 (공학관 2층 227호)
합격자 발표	2018.08.16.(목)	자동차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및 SMS전송

3. 전형료 : 50,000원

우리은행 327-120897-01-044 국민대학교

4. 제출서류

공동 서류	▶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▶ 대학 성적증명서 1부 - 학사편입은 전적대학 졸업, 성적증명서 포함(해당자) ▶ 사진(3×4cm, 반명함판) 3매 ▶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(자율양식) 1부
편입생 서류	▶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

※ 모든 증명서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하여야 함.

5. 유의사항

- 1) 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원서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,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함(등록금 반환 불가).
- 2) **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.**
- 3)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2018.08.03.(금) 16:00(접수 마감일)까지 도착분에 한함.

6. 합격자 안내

- 1)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와 SMS(문자송신)를 통해 개별 전송하므로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.
- 2)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.
- 3)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졸업예정자는 2018.08.27(월)까지 졸업증명서를 자동차산업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함.
- 4) 입학을 포기 할 경우에는, 등록금반환요청서를 2018.08.27(월)까지 자동차산업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함(전액 환불). 다만, 학기 개시일 이후 제출 시에는 본교의 등록금 반환 기준(붙임)에 따름.

반환기준일	환불금액	제출서류	비고
등록이후 ~ 당해 학기 개시일	등록금(입학금 포함) 전액	- 등록금반환요청서 -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- 합격자명의로 통장사본	자동차산업대학원 교학팀 제출
당해 학기 개시일 다음날	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름(아래 <별표 2> 참고)	- 등록금반환요청서 -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- 신입생명의로 통장사본	

7. 신입생 등록안내

구분	기간	비고
등록기간	2018.08.20.(월) ~ 2018.08.23.(목) 16:00	자동차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납부

※ 본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되므로,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.

8. 등록금 안내(2018학년도 1학기 기준)

(단위 : 천원)

입학금	수업료	계
1,029	5,560	6,589

9. 학사 안내

- 1) 전적대학과 다른 학과를 지원하여 입학한 경우, 해당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(최대 6학점)
- 2) 수업연한은 2년(24학점/4학기)이며, 마지막 학기 때 학위논문제출과 추가학점 취득(6학점 이상) 중 택일 가능 함.
- 3) 학·군 제휴 협약조건에 따른 군 위탁생은 최대 12학점 인정(해당자) 및 수업료의 50% 학비감면

10. 장학금 안내

	군위탁생	본교 교직원	본교 출신	업계 종사자
지금 비율	50%	50%	30%	20%

11. 기타사항

- 1) 병역 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음.
- 2) 산업체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2일간 야간에 집중강의.

12. 입학상담 및 문의사항

- 1) 전화 : 02) 910-4350, 팩스 : 02) 910-4718
- 2) 홈페이지 : <https://gsaik.kookmin.ac.kr/>
- 3) 서류제출처 주소 : 우편번호 02707
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자동차산업대학원 교학팀(공학관 2층 227-1호)

자 동 차 산 업 대 학 원

<별표 2> <개정 2015.08.31., 2016.09.01.>

등록금 반환기준

1. 해당 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2.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)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반환사유발생일		반환금액
일반학생	교육대학원(계절제)	
1일차 ~ 30일차	1일차 ~ 4일차	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(단, 휴학생은 등록금 전액)
31일차 ~ 60일차	5일차 ~ 8일차	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61일차 ~ 90일차	9일차 ~ 12일차	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91일차 이후	13일차 이후	반환하지 아니함

※ 단,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.

※ 군입대 또는 임신·출산·육아에 의한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사유발생일과 상관없이 전액을 반환함

※ 계절제로 입학한 교육대학원 학생이 해당학기에 계절제 수업만을 수강할 경우에 한하여 위의 계절제 기준을 적용함.

* 전문 참고 : 국민대학교 규정집

http://reg.kookmin.ac.kr/site/educational_administration/academic_affairs_administration/academic_19.htm 의 '전문 다운로드'